우정인재개발원 공고 제2023 - 24호

2023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3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우정인재개발원장

1. 시험일시: 2023. 6. 3.(토), [오전] 10:00~11:20 / 80분

2. 모집우정청별 시험장소

모집우정청	지역	시험장
서울지방우정청	서울	5개
경인지방우정청	인천	1개
	부천	3개
	수원	2개
	안양	2개
	의정부	2개
부산지방우정청	부산	5개
충청지방우정청	대전	4개
전남지방우정청	광주	3개
경북지방우정청	대구	3개
전북지방우정청	전주	2개
강원지방우정청	원주	1개
제주지방우정청	제주	1개

※ **붙임자료「2023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붙임「2023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대상자 응시요령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등으로 시험장소(학교)가 폐쇄될 경우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며, 변경장소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 경인지방우정청의 경우 원서접수 시 시험장소를 인천으로 신청했을 경우 인천 또는 부천지역 시험장으로, 수원으로 신청했을 경우 수원 또는 안양 지역 시험장으로 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붙임)**에 따라 안전하게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손소독,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경우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실시합니다.

-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 의심 여지가 있는 응시자 또는 확진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 감염 유증상자와 확진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시험실시

※ 코로나19 확진으로 시험일 현재(6.3.토) 격리기간 중인 응시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9.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 안내】참고

- 시험실의 **출입문·창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할 예정이므로 **응시자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날씨를 사전에 확인하여 개인별 적합한 복장 준비 필요

다. 시험 전(前)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장 주변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마.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s://kpost.jinhakapply.com)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 수첩, 모바일 신분증, 유효기간 지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차.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고,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타.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붙임 [답안지 견본] 참조

가.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 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 잘못된 표기 :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

다.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 작성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

가. 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답가안 공개**: 2023. 6. 3.(토) 17:00
-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 2023. 6. 3.(토) 17:00 ~ 6. 7.(수) 18:00

※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홈페이지(채용문의 게시판)

- **최종정답 공개**: 2023. 6. 14.(수) 18:00

5. 가산점 비율 확인 및 표기 안내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3. 6. 2.)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종류 및 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의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3.6.2.)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1577-0606)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 시험과목(4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단위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 확인

다. 의사상자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5)에 확인

6. 필기시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가. 점수 사전공개 기간 : 2023. 6. 21.(수) 09:00 ~ 6. 22.(목) 21:00

나. 점수 이의제기 기간 : 2023. 6. 21.(수) 09:00 ~ 6. 22.(목) 21:00

다. 이의제기 결과 확인 기간 : 2023. 6. 26.(월) 09:00 ~ 21:00

※ 원서접수 사이트(https://kpost.jinhakapply.com)에서 성적확인 및 이의제기

7.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우정사업본부 및 우정인재개발원,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와 원서접수 사이트(https://kpost.jinhakapply.com)에 게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 2023. 7. 11.(화)**

8.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

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시험일 현재(6.3.토) 격리기간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자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사항을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로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등록방법: 해당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채용담당에게 유선 신고

※ 자진신고 등록기간: 5. 30.(화). ~ 6. 2.(금). 18:00

9.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시험실을 운영합니다.

- **시험일 현재(6.3.(토)) 확진으로 격리기간인 응시자는** 일반시험실이 아닌 방역조치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응시자는 해당 지방우정청으로 자진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기간 종료, 재택치료 기간종료, 완치된 응시자는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합니다.

나. 시험응시 절차: ① 신고 → ② 응시대상 확인 → ③ 시험응시

① (응시자 신고) 시험일(6.3.토)이 격리기간에 포함 시 **해당 지방우정청에 알림**

- 시험 전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 전일 18:00까지 해당 지방우정청에 유선으로 자진 신고

※ 자진신고 신청방법: 해당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채용담당에게 유선 신고(응시번호, 성명, 격리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휴대폰번호) / 검사결과 양성 통보 문자 또는 검사 결과지 사본 팩스(또는 사진문자, 메일 등) 송부

우정청	전화	팩스	e-mail
서울지방우정청	02)6967-9141	0505-005-1110	pjh0326@korea.kr
경인지방우정청	031)8014-3256~7	0505-005-1259	peonyy@korea.kr
부산지방우정청	051)559-3235	0505-005-1457	bottlecrane@korea.kr
충청지방우정청	042)611-1273	0505-005-1657	goo6man@korea.kr
전남지방우정청	062)600-4733	0505-005-1827	teresa0522@korea.kr
경북지방우정청	053)940-1565	0505-005-1957	aruseran@korea.kr
전북지방우정청	063)240-3742	0505-005-2107	manim921@korea.kr
강원지방우정청	033)749-2042	0505-005-2197	lse9712@korea.kr
제주지방우정청	064)800-5963	0505-005-2291	ghm7777777@korea.kr

※ 자진신고 외 기타 사항은 우정인재개발원(☎041-560-5800)으로 문의

② (응시대상 확인) 응시자의 자진신고(시험응시 신청)사항 확인 후 응시자의 시험장 예비시험실로 사전지정

③ (시험응시) 시험장 방역담당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 입실 및 응시

붙임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 수칙

【상 시】

▼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코 · 입 노출 금지]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응시자는 마스크(KF94) 착용 적극 권고

▼ 시험장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험장 입장 시 현관 입구 방역담당관의 안내에 따라 발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는 시험감독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시험 중】

▼ 시험 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착용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전에 창문 등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 바랍니다.

【종료 이후】

▼ 퇴실 시 응시자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이오니, 응시자들은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질서 있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마시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